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60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승원·김용만·이강일
김원이·박상혁·강준현
민병덕·김남근·박범계
윤준병·임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한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u>100분의 2</u>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u>5억원</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과징금) ① ----- ----- ----- ----- ----- ----- <u>100분의 10</u> 을 ----- ----- -----. ----- ----- ----- ----- ----- <u>50억원</u> -----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u>5억원</u> 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 ----- ----- ----- ----- <u>20억원</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